## 국가 보안법 위반(찬양·고무등)

[인천지방법원 2009. 12. 10. 2008고단2799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최재봉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황재선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압수된 증 제20, 21, 41, 54, 57, 84, 92, 94 내지 99, 101, 111, 125, 136 내지 138, 147 내지 149, 151호를 몰수한다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다음(Daum) 카페 내 이적표현물의 각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